

대회규정

- 제1조 본 대회는 제41회 협회장기 전국남녀하키대회라 칭한다.
- 제2조 본 대회는 (사)대한하키협회가 주최한다.
- 제3조 본 대회는 매년 1회씩 개최하며, 일자 및 장소는 주최 측에서 결정한다.
- 제4조 본 대회 참가 자격은 다음과 같다.
1. 대한하키협회 2022년도 경기인 등록 규정에 의거 등록을 필한 단일팀 이어야한다.
 2. 지도자(부장, 감독, 코치, 트레이너) 및 선수는 한 팀에만 등록하고 참가 신청할 수 있다.
 3. 동일 소속 팀에서 남자, 여자를 구분하여 운영하는 단체(팀)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감독이 이중으로 등록하여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. 이 경우 동일 대회 세부 종별에 중복 출전할 수 있다.
- 제5조 본 대회 경기방식은 중등부, 고등부, 내셔널부(대학부, 국군체육부대)는 토너먼트로 진행하며, 코리아부(일반부)는 풀리그전(라운드 리그전 포함)으로 진행한다.
(코로나-19로 인하여 경기 일정은 우리 협회에서 일부 변경할 수 있음.)
- 제6조 본 대회 경기 시간은 중등부, 고등부, 내셔널부, 코리아부 총 60분(15분*4쿼터)으로 한다.
1. 토너먼트전은 동점으로 종료될 경우 페널티 슛 아웃을 실시하여 승자를 결정한다.
 2. 코리아부(일반부) 리그전 채점방법은 승자 3점, 패자 0점으로 채점하고 동점으로 종료될 경우에는 페널티 슛 아웃을 실시하며, 이때 채점방법은 승자 2점 패자 1점으로 한다.
 3. 해당 라운드 결과가 동점일 경우에는 (1)정규 게임 승리 경기 수 (2)슛 아웃 승리 포함 경기 수 (3)골득실 차 (4)다득점 (5)승자승 순으로 하며, 이 다섯가지가 같은 경우 페널티 슛 아웃 5회로 한다. 슛 아웃을 진행하는 팀의 경기명단은 해당 경기 종료 10분 전 제출되어야 한다. 시간 내 준비가 안되는 경우 패배한 것으로 본다.(각 라운드별 순위를 정할 시 적용.)
- 제7조 본 대회 경기 시작 30분 전까지 18명 엔트리 제출이 완료 되어야 한다.
- 제8조 본 대회 경기 시작 시에 각 팀은 11명 이상의 선수가 출전하여야 하며, 경기 진행 중에는 경기장에 최소 8명의 선수가 있어야 한다. 위반 시에는 경기를 종료시킨다.
(이 경우에 상대팀에게는 득실차이가 없을 경우 5:0으로 승리한 것으로 처리하고, 득점차가 발생 시에는 종료되는 시점의 득실에서 5골을 가산하여 승리한 것으로 처리한다.)
- 제9조 본 대회 경기 도중 일몰 또는 기타 사유로 경기 진행이 불가능할 시는 주최 측이 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재경기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.
1. 득점차가 있을 시에는 잔여 시간의 경기만 실시한다.
 2. 득점차가 없을 때는 정규시간의 경기를 실시한다.
 3. 슛 아웃은 득점차 여부와 관계 없이 진행하며, 5명 중 미실시 선수가 있는 경우 해당 선수부터 실시 한다.
- 제10조 선수교체는 전 경기 시간을 통해서 엔트리 18명 이내에서 수시로 교체할 수 있다.
- 제11조 경기도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부정 선수가 발각되었을 시는 성적 여하를 막론하고 팀 실격으로 처리 한다.(경기 중 발각된 팀이 발생할 경우 상대 팀은 자동 승리한 것으로 간주함.)
1. 경기 도중 집단으로 경기장 이탈 및 경기에 불응하며 심판이 경고한 후 지정한 시간 이내에 출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몰수게임으로 처리하며, 우리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 한다.

(몰수게임으로 처리될 경우 그 대회 모든 성적은 무효 처리한다)

2. 완전퇴장을 당한 선수는 당해 경기는 물론 그 대회 잔여 경기에 출전할 수 없으며 사안에 따라 우리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한다.
3. 벤치에서 퇴장 당한 지도자(옐로우, 레드카드)와 선수는 [완전퇴장(레드카드)] 개인상 수상 대상에서 제외한다.
4. 경기 중 발생한 사안의 이의신청(부정선수, 심판판정, 경기장 질서문란)은 경기 종료 후 30분 이내에 유후원칙에 따라(단장, 부장, 감독 명의로) 이의 신청료 50만원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한다.(이의 신청료는 환불하지 않는다.)
이에, 사안은 경기위원회(T.D, A T.D, U.M)에서 결정한다.
6. 팀 벤치에 감독, 코치가 특별한 사유 없이 벤치를 이탈할 시는 “경기 중 시행규칙”에 의거 처리한다.
7. 상기 사항 이외 발생하는 사항은 “경기 중 시행규칙”에 의거 처리한다.
8. 본 대회 참가 신청 마감 후 불참한 팀은 감독 벤치 활동 6개월 정지 처리한다.

제12조 본 대회 우승팀에게는 우승기를 수여하며 우승기는 차기 대회 시까지 보관하였다가 다음 대회에 주최 측에 반환하여야 한다. 단, 보관 도중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는 변상할 의무가 있다.

제13조 본 대회 대표자회의 시 대진 추첨은 팀 관계자(단장, 부장, 감독, 코치, 트레이너)만 참가할 수 있다.(선수는 불가하며, 팀 관계자가 아닌 자가 추첨 시 재추첨 원칙으로 한다.)

제14조 본 규정은 경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본 규정에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주최 측에서 결정 한다.